

제300회 임시회  
2011. 5. 20(금)

# 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 청 북 도 의 회  
행 정 문 화 위 원 회

# 「충청북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2011. 5. 20(금)  
행정문화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박종성 의원 외 6인

나. 발의일자 : 2011년 5월 2일

다. 회부일자 : 2011년 5월 4일

라. 상정일자 : 2011년 5월 16일

(제3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 : 생략)

가. 제안이유

도립예술단 창단 후 운영과정에서 노출된 제반 문제를 감안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제명 변경

충청북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→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

- 명칭변경

충청북도립챔버오케스트라 → 교향악단

- 예술단 규모 확대

- 단원 30명 → 42명

- 사무국직원 2명 → 규칙으로 정함.

- 예술단 업무분장 구분

- 예술감독겸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의 기량연마와 연주를 지휘한다.(신설)
- 사무국장은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며 연주기획, 홍보, 마케팅, 단원관리, 서무 등 제반 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한다.(신설)
- 문구정비
  - 예술단 → 도립교향악단
  - 챔버오케스트라 → 교향악단
  - 상임단원 → 상임단원 및 비상임단원
- 운영자문회 운영 현실화
  - 명 칭 : 운영자문회 → 운영자문위원회
  - 회 장 : 문화여성환경국장 → 위원장 단장(행정부지사)
  - 부회장 : 예술감독 → 부위원장 문화여성환경국장

### 3. 검토보고 요지

#### (행정문화전문위원 : 손자용)

금번 충청북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립예술단 창단 후 운영과정에서 노출된 제반문제를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

주요내용으로는

- 제명을 “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”로 변경하였고,
- 충청북도립챔버오케스트라의 명칭을 “교향악단”으로 변경하였으며,
- 교향악단의 규모를 30명에서 42명 이내로 확대하고, 사무직원은 규칙에 위임.
- 예술감독겸 지휘자와 사무국장의 업무를 구분하였으며,
- 운영자문회의 운영현실화를 위하여 명칭을 “운영자문위원회”로 변경하고,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, 부위원장은 문화여성환경국장을 상향 조정하였음.

금번 충청북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립에

술단 창단 후 운영과정에서 노출된 제반문제를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라 도민의 문화예술욕구 충족 및 도립교향악단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

## 충청북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”를 “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충청북도립예술단”을 “충청북도립교향악단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충청북도립예술단(이하 “예술단”이라 한다)”을 “충청북도립교향악단(이하 “도립교향악단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예술단”을 “도립교향악단”으로, “충청북도립챔버오케스트라와”를 “교향악단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교향악단의 구성원(이하 “단원”이라 한다)은 42명 이내로 구성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예술단”을 각각 “도립교향악단”으로, “통할”을 “총괄”로, “직원”을 “사무직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예술감독겸 지휘자(이하 “예술감독”이라 한다)는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의 기량연마와 연주를 지휘 한다.

④ 사무국장은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며 연주기획, 홍보, 마케팅, 단원관리, 서무 등 제반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예술단”을 “도립교향악단”으로 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상임단원”을 “상임단원 및 비상임단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을 삭제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상임단원”을 “상임단원 및 비상임단원”으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중 “상임단원”을 “상임단원 및 비상임단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제5조제2항”을 “제5조제3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위촉기간)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.

제10조의 제목을 “단원의 해촉”으로 하고, 제10조제1항을 제10조 본문으로 하고, 본문 중 “단원과 사무직원”을 “단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예술단”을 “도립교향악단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8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1조의 제목 “운영자문회”를 “운영자문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 중 “위촉회원”을 “위촉위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“운영자문회”를 “운영자문위원회”로, “심의의결”을 “자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예술단”을 “도립교향악단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예술단운영”을 “도립교향악단운영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과 제8항 중 “운영자문회”를 “운영자문위원회”로 한다.

- ① 도립교향악단 운영의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운영자문위원회(이하 “운영자문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운영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

하되,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, 문화여성환경국장으로 하며,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여성환경국장이 되고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과 제2항 중 “예술단”을 각각 “도립교향악단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운영자문회의”를 “운영자문위원회의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과 제2항 중 “예술단”을 각각 “도립교향악단”으로 한다.

제18조 중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충청북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</u></p>	<p><u>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</u></p>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도민의 정서 함양과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설치하는 <u>충청북도립예술단</u>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구성) ① <u>충북도립예술단</u> (이하 "예술단"이라 한다)의 단장은 -----(생략)</p> <p>② 예술단에는 <u>충청북도립챔버오케스트라</u>와 사무국을 둔다.</p> <p>③ <u>충북도립챔버오케스트라</u>의 구성원 (이하 "단원"이라 한다)은 30명 이내, 사무국 직원은 2명 이내로 구성하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제3조(단장 등의 직무) ① 단장은 <u>예술단</u>을 대표하며, 충청북도지사 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의 명을 받아 <u>예술단</u>을 통할하고 단원과 직원을 지휘 감독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<u>예술감독겸 지휘자</u> (이하 "예술감독"이라 한다)는 공연기획, 공연지휘, 협연자 선정등 공연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도민의 정서 함양과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설치하는 <u>충청북도립교향악단</u>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구성) ① <u>충청북도립교향악단</u> (이하 "도립교향악단"이라 한다)의 단장은 -----(생략)</p> <p>② <u>도립교향악단</u>에는 <u>교향악단</u>과 사무국을 둔다.</p> <p>③ <u>교향악단</u>의 구성원(이하 "단원"이라 한다)은 42명 이내로 구성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제3조(단장 등의 직무) ① 단장은 <u>도립교향악단</u>을 대표하며,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의 명을 받아 <u>도립교향악단</u>을 총괄하고 단원과 사무직원을 지휘감독 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예술감독겸 지휘자</u> (이하 "예술감독"이라 한다)는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의 기량연마와 연주를 지휘한다.</p>



<p>④ (신설)</p> <p>제4조(단원의 구분) ① (생략)          ② 상임단원은 <u>예술단의 일원</u>으로서 공연에 출연하는 상시근무자를 말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5조(자격과 위촉) ① (생략)          ② (생략)          ③ <u>상임단원은</u> ----- (생략)          ④ <u>비상임단원은 예술감독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.</u>          ⑤ <u>사무직원은 예술분야에 식견이 풍부하고 공연기획 능력이 있는자를 도지사가 위촉한다.</u></p> <p>제6조(전형위원회) ① <u>상임단원의</u> -----          (생략)          ②~③ (생략)</p> <p>제7조(<u>상임단원 전형방법</u>) ① 전형은 공개로 실시하되 실기시험과 면접시험 및 경력평정으로 하며, 면접시험은 합격한 단원에 한하여 실시한다. 다만, 제5조제2항에 의한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할 수 있다.</p>	<p>④ <u>사무국장은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며 연주기획, 홍보, 마케팅, 단원관리, 서무 등 제반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한다.</u></p> <p>제4조(단원의 구분) ① (현행과 같음)          ② 상임단원은 <u>도립교향악단의 일원</u>으로서 공연에 출연하는 상시근무자를 말한다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자격과 위촉) ① (현행과 같음)          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 ③ <u>상임단원 및 비상임단원은</u> ----- (생략)          ④ 삭제          ⑤ 삭제</p> <p>제6조(전형위원회) ① <u>상임단원 및 비상임단원의</u> -----          ---- (생략)          ②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<u>상임단원 및 비상임단원 전형방법</u>) ① 전형은 공개로 실시하되 실기시험과 면접시험 및 경력평정으로 하며, 면접시험은 합격한 단원에 한하여 실시한다. 다만, 제5조제3항에 의한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할 수 있다.</p>
---	--

<p>② 공개전형 및 채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전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	<p>② 공개전형 및 채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전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
<p>제9조(위촉기간) ① 단원 및 사무직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.</p>	<p>제9조(위촉기간)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.</p>
<p>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과 사무직원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.</p>	<p>② (삭제)</p>
<p>제10조(단원 등의 해촉)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원과 사무직원의 직을 해촉할 수 있다.</p>	<p>제10조(단원의 해촉)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원의 직을 해촉할 수 있다.</p>
<p>1.~5. (생략) 6. 예술단의 활동을 거부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자 7. (생략) 8. 기타 법령 등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</p>	<p>1.~5. (현행과 같음) 6. 도립교향악단의 활동을 거부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자 7. (현행과 같음) 8. 그 밖에 법령 등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</p>
<p>제11조(운영자문회) ① 예술단의 운영의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립예술단운영자문회(이하 운영자문회)라한다)를 둔다.</p>	<p>제11조(운영자문위원회) ① 도립교향악단 운영의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립교향악단운영자문위원회(이하 “운영자문위원회 라 한다)를 둔다.</p>
<p>② 운영자문회는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하되 당연직과 위촉직 회원으로 구성한다.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	<p>② 운영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하되,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

<p>③ <u>당연직</u> 회원은 <u>문화여성환경국장</u>과 <u>예술감독</u>으로 하며, 회장은 <u>문화여성환경국장</u>이 되고 부회장은 <u>예술감독</u>이 된다.</p>	<p>③ <u>당연직</u> 위원은 <u>행정부지사</u>와 <u>문화여성환경국장</u>으로 하며, 위원장은 <u>행정부지사</u>가 되고 부위원장은 <u>문화여성환경국장</u>이 된다.</p>
<p>④ <u>위촉회원</u>은 ----- (생략)</p>	<p>④ <u>위촉위원</u>은 ----- (생략)</p>
<p>⑤ <u>위촉회원</u>은 ----- (생략)</p>	<p>⑤ <u>위촉위원</u>은 ----- (생략)</p>
<p>⑥ <u>운영자문회</u>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<u>심의·의결</u>한다.</p>	<p>⑥ <u>운영자문위원회</u>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<u>자문</u>한다.</p>
<p>1. <u>예술단</u> 운영의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. <u>예술단운영</u> 기본계획 3. (생략) 4. <u>기타</u>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	<p>1. <u>도립교향악단</u> 운영의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. <u>도립교향악단운영</u> 기본계획 3. (생략) 4. <u>그 밖에</u>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
<p>⑦ <u>운영자문회</u> ----- (생략)</p>	<p>⑦ <u>운영자문위원회</u> ----- (생략)</p>
<p>⑧ <u>운영자문회</u>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<u>문화예술과장</u>이 된다.</p>	<p>⑧ <u>운영자문위원회</u>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<u>문화예술과장</u>이 된다.</p>
<p>제13조(예산지원 등) ① <u>예술단</u>의 운영 ----- (생략)</p>	<p>제13조(예산지원 등) ① <u>도립교향악단</u>의 운영 ----- (생략)</p>
<p>② <u>도지사</u>는 <u>예술단</u>으로 ----- (생략)</p>	<p>② <u>도지사</u>는 <u>도립교향악단</u>으로 ----- (생략)</p>
<p>제14조(보수 및 실비보상) ① (생략)</p>	<p>제14조(보수 및 실비보상) ① (현행과 같음)</p>
<p>② <u>전형심사</u>에 참석하는 위원 및 <u>운영자문회의</u>에 ----- (생략)</p>	<p>② <u>전형심사</u>에 참석하는 위원 및 <u>운영자문위원회</u>에 ----- (생략)</p>

<p>제15조(관람료 등) ① <u>예술단이 공연을</u> ------(생략)                  ② <u>예술단의 외부공연으로</u> -----(생략)</p> <p>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<u>관하여 필요한 사항은</u>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	<p>제15조(관람료 등) ① <u>도립교향악단이 공연을</u> -----(생략)                  ② <u>도립교향악단의 외부공연으로</u> -----(생략)</p> <p>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<u>필요한 사항은</u>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
---	--

## 관련법령 발취

###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